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중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·통계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입법예고(2026. 8. 5. ~ 9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
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
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
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4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
다.

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[별표 1]

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(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)

1.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.51.1000호, 제7208.51.9000호, 제7225.40.9010호, 제7225.40.9091호 또는 제7225.40.90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

가. 미국기계기술자협회(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, 이하 "ASME"라 한다) 규격 SA516-70(두께 134밀리미터 이상)

나. ASME 규격 SA299-Grade B(두께 50밀리미터 이상)

다. ASME 규격 SA302-Grade B

라. ASME 규격 SA302-Grade C